

가정통신문	2019학년도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안내	2019. 03. 06.  전주고등학교 ☎ 285-0212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느껴지는 이 때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형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을 우리 아이들은 학업, 교우관계, 진로 문제 등 각 개인마다의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지 못한 갈등과 고민들로 훌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길은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어른들의 노력일 것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와 바람을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시간 할애하시어 보람되고 귀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학부모상담주간 운영 안내

1) 운영 기간

- 일시 : 2019.03.11.(월)~03.22.(금) 2주간 운영

2) 상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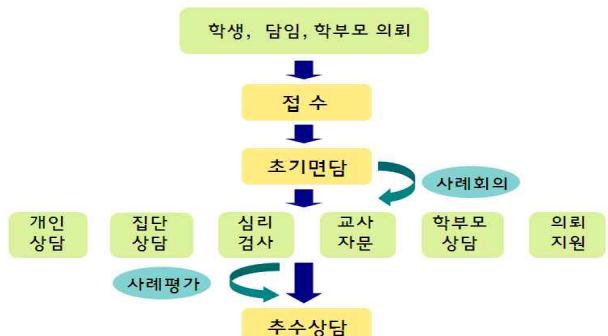
- 1,2학년 : 학교생활 적응. 교우관계 및 학업성적, 진로 관련 등
 - 3학년 : 학교생활 및 진로, 진학 상담 등
 - Wee클래스(상담실) : 진로, 심리, 정서적 영역의 상담 등

3) 상담방법

-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 : 사전 약속 후 상담
(상담주간 및 교육과정설명회(2018.3.21.(목) 활용)
 - 1학년 : 285-3281 - 2학년 : 285-0215 - 3학년 : 285-0
 - Wee클래스(상담실) : 사전 약속 후 상담 (902-7222)

2. 본교 Wee클래스 상담운영 안내

- 개인상담 (사전 예약제)
 - 집단상담
 - 인성프로그램
 - 예방교육
 - 진로교육
 - 심리검사 (무료- 적성, 학업, 성격 등)



3. 전주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운영 안내

센터소개 : 덕진Wee센터(진북초등학교 내, 253-9214), 원산Wee센터(전주초등학교 내, 253-9523)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상담하는 곳이며, 학생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상담치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진단-상담-치료가 가능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 전주 관내 초·중·고등학생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상담비용 : 무료(보호자동반 필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 및 역할



아동학대

의면하지마세요.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아이자킴콜 112** (24시간 신고접수)

당신의 관심과 신고만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112 신고접수 후 관할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뿐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 아동학대 신고자 신원보호 관련 법령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경찰청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자는 처벌받게 되며,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세 직군은 뒷면 참조

아동학대 신고 요령

STEP 1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
- 아동학대 의심사항 확인
- 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우선확보
(예: 긴박한 상황인 경우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이후에 신고)

STEP 2 아동학대 신고 11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
-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신고자 정보 전달

STEP 3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의심스런 상황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전달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블자국, 뜨거운 물에 침겨 생긴 화상자국
- 거드랑이, 팔뚝 인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김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징후

-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 언어장애, 비행, 기행 (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 특정 물건을 계속 빼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성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 및 강요하는 행위

징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위축, 흔상, 틱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굵힌 자국 또는 흉진
- 행문 주변의 멍이나 칼파상
- 성병 감염 및 임신



방임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징후

- 발달지연,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아동에게 머릿니, 반대 등이 있음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예방진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 지속적 피로, 불안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 음식을 구걸하거나 흡침
- 비행 또는 도독질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03. 06.

전주고등학교장